

# 연구윤리 규정

## 제1조 목적

이 규정은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칭함)에서 발행하는 『태동고전연구』(이하 ‘학술지’라 칭함)에 게재되는 논문, 번역물 등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.

## 제2조 제정 및 적용

이 규정은 “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(제정 2018. 7. 17, 교육부 훈령 제236호)”을 준용하여 제정하였다. 규정 이후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과 연구자에게 적용된다.

## 제3조 편집 및 심사 과정

- (1)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규정에 의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. 심사위원 선정은 충분한 자격 검토와 공평을 기해야 하며, 심사과정과 게재 여부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.
- (2)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논문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,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.
- (3)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- (4)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고자의 정보(소속과 직위)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.
- (5) 특수관계인(미성년자 또는 가족) 공저 논문의 경우 ‘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’ 및 ‘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’을 제출해야 한다.

#### 제4조 금지행위의 범위

- (1) 표절 : 타인의 주장, 아이디어,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활용하는 행위.
- (2) 위조 및 변조 :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조·누락하는 행위.
- (3) 중복 게재 : 자신의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.
- (4) 중복 투고 : 자신의 연구물을 심사기간 동안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한 행위.
- (5) 자기 표절 :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재수록하거나, 여러 편의 글을 짜깁기하여 한편의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.
- (6) 기타 인문학·사회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.

####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

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칭함)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위원장 : 연구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 : 편집위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.
- ③ 간사 : 편집위원회 간사를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.

## 제6조 위원회의 권한

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,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
## 제7조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

위원회 위원 또는 제보자가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,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구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심의한다. 부정행위로 보고된 투고자, 심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.

## 제8조 소명 기회의 보장

위원회에 부정행위로 보고된 투고자, 심사위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 제9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

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, 위원회에서는 해당 투고자, 심사위원, 편집위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## 제1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

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, 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

투고자에 대해서는 논문 삭제, 자격 정지 내지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기타 사항

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“『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』(제정 2007. 2. 8,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)”에 따라 적용한다.

### 부칙

1. 이 규정은 2008년 5월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한다.